

오스트리아 신문평의회

I. 설립배경

오스트리아의 언론인들은 영국과 스웨덴신문평의회의 활동을 보고 그 유용성을 인식한 나머지 1961년 언론을 위한 자율적 기관으로서 신문평의회를 발족시켰다. 설립의 주도기관은 오스트리아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였다.

II. 구성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에 의해 각각 10명의 위원이 임명된다. 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매 회기년도 첫번째 회의에서 위원 가운데 1명이 선출된다. 따라서 임기는 1년이다.

III. 활동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언론법에서 언급된 모든 사항들을 포괄하여 심의한다. 반론권문제 뿐만 아니라 초상권문제까지도 다루고 있다. 그러나 평의회는 심의기준을 특별히 마련해 두고있지는 않으며, 다만 위원들 자신의 양심과 언론법에 나타난 기준을 따르고 있다.

동 평의회는 언론자유를 보호하는 한편, 언론내의 불공정을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신문이 본래의 의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가 및 언론자유가 침해되지 않았는가의 여부를 관찰한다.

또한 동 평의회는 언론의 명성과 지위를 유지하고, 언론의 비위와 결함을 지적하며, 그와 같은 잘못을 시정 또는 제거하도록 요청하고, 입법·행정·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 언론의 이익을 대표하도록 평의회에 권한 내에서 모든 임무를 수행 한다.

그리고 동 평의회는 자율통제의 도덕적 재판소로서의 윤리기능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진실보도이더라도 센세이셔널한 제목을 단 기사에 대해선 냉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징계재판소가 아니기 때문에 언론사를 견책하거나 벌금을 징수하거나 또는 언론인의 직책을 해임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동평의회는 오직 도덕적 권위와 결정에 대한 자발적 수용의 인정에만 의존할 따름이다.

신문평의회가 언론사에게 평결문의 내용 게재를 강요할 권한이 없지만, 요즘에는 거의 모든 오스트리아의 신문들이 평결문을 지상에 정식으로 게재하고 있다.

IV. 불만호소의 요건 및 심의절차

신문·정기간행물·라디오·텔레비전 방송이 언론자유를 남용했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거나, 보도의 진실성이 결여됐거나, 평의회가 마련한 윤리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누구나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에 불만을 호소할 수 있다. 평의회는 또한 자체심의를 통해 그와 같은 문제의 사안들을 다룰 수 있다. 특별한 경우, 법원에 소송절차가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선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심의가 보류된다. 동평의회는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에 관한 보도가 잘못되었을 경우 재판이 종결된 후에 추후보도를 위한 심의를 할 수 있다.

한편 동평의회는 불만호소의 내용이 허위 또는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다.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해당 사건의 심의대상 포함여부를 보통 1차 회의에서 결정한다. 필요할 경우 사전조사를 위해 조사관을 임명한다. 동 평의회는, 제기된 사안이 근거가 확실한 증거에 의해 명백해지거나 조사관이 제시한 조사자료에 의해 명백해지면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고 바로 평결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경우 관계자들을 소환할 수 있다.

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에 대한 지지 및 기각의 평결 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할 경우 합의를 권유하는 평결을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평의회는, 평결 시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V. 신문평의회 정관

가. 약정

오스트리아 신문발행인협회와 자유예술직업노조 언론인지부는 1961년 1월 일자로 확정된 기존의 약정을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 약정으로 개정하는데 합의 했다.

1.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오스트리아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는 각각 10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위원들은 각각 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보선에 참가할 경우 동등한 권리가 주어진다.

2. 오스트리아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는 자기 단체의 회장 내지 대표자 등을 신문평의회에 파견할 수 없다.

3. 신문평의회 위원은 오스트리아에 계속 거주하여 국회의원선거권이 있는 자라야 한다.

4. 신문평의회는 재정은 신문발행인협회에 의해서 충당된다. 동 협회는 사무국도 보조해야 한다.

5. 신문평의회를 해체할 경우 반드시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의 공동의결을 거쳐야 하며, 또 해체의사를 상대방 협회에 최소한 1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

나. 업무규정

1. (1)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평등하고 독립적인 언론인의 공동체이다.

(2) 신문평의회는 언론법(theMedia Law) 이 규정한 모든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

2. 신문평의회 과제

(1) 언론자유 수양

(2) 언론에서의 범죄 보도, 성문제 기사를 비롯한 선정적 보도와 사생활 침해를 유발하는 보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3. (1) 신문평의회 위원은 비상임 명예직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신문발행인협회와 기자협회는 위원 임명 사실을 서류를 갖춰 통보해야 한다. 임명된 위원은 수락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2) 신문평의회 위원들은 자유활동이 보장되며 평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각 위원은 소속협회기타단체의 지시에 구속 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각 위원은 독자적으로 행동해야 하며 오직 자신의 양심과 현행법에만 책임을 져야 한다.

4. 신문평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대리위원의 임기도 동일하다.

5. (1) 신문평의회는 의장과 의장대리를 매년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출은 매 회기년도 개시 후 첫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2) 의장선출을 포함한 모든 의결은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4분의 3 이상이어야 가결된다.

(3) 신문평의회 모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4) 불만호소대상이 된 신문사에 소속된 평의회 위원은 사안심의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의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5) 신문평의회 모든 회의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6. 신문평의회 회의는 적어도 2개월에 1회 이상 소집되어야 한다.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위원 가운데 7인 이상이 개회를 요청하면 의장은 8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7. (1) 정기간행물의 보도내용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남용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을 때, 또한 보도의 진실성이 명백히 결여됐을 때 누구나 이 사실을 신문평의회에 불만 호소할 수 있다.

(2) 신문평의회는 보도내용의 문제점들을 자체 심의할 권한이 있다.

(3) 신문평의회에 불만 호소된 사건 중 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심의처리를 중단하며, 재판이 완료된 후에야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

(4) 신문평의회는 불만호소의 내용이 근거 없고 무의미하거나 불법적인 경우에 그 사안심의를 보류할 수 있다.

(5) 불만 호소되어 심의에 착수된 사안과 관계된 자료는 심의과정에서 참고 될 수 있다.

(6) 심의회의 개최 시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책임자 및 기자나 필자를 참석시켜야 한다. 소환장은 적어도 개회 1주일 전에 서신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소환대상자가 불참하더라도 회의는 진행된다.

(7) 언론사측 소환대상자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대리인은 회의 참석 시 서류로 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8) 신문평의회는 소환대상자가 요청한 참고인을 소환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

(9) 신문평의회는 특정위원이 소속한 신문사가 불만호소의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심의를 할 수 없다. 자격상실에 대한 여부는 투표로 결정하며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때 투표 시 본인은 투표권을 상실하게 된다.

8. (1) 신문평의회는 심의회에서 불만호소인의 주장과 언론사측의 진술을 듣고 참고인의 증언을 청취한 후 비밀투표를 통해 평결을 하게 된다.

(2) 심의는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① 신문평의회에서 불만호소의 이유가 없다고 평결할 때

② 문제된 보도가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불만호소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평결 내릴 때

(3) 신문평의회가 작성한 평결문은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 편집책임자 및 기자나 필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신문평의회가 평결문을 지면에 공개키로 결정한 경우 이 사실을 평결문 속에 삽입해야 한다.

(4) 평결문 내용은 회원신문사 및 유관 언론단체들에게도 통보되어야 한다.

VI. 언론윤리강령(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

-보도를 위한 기본원칙-

신문의 발행인, 편집인, 라디오, TV의 방송국 및 기자들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적인 공공매체의 자유에 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사건에 대한 정보 및 논평의 임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대하여, 진실, 청렴 및 정확성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항상 자각할 것을 호소한다.

언론의 본래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나, 또는 현실참여적인 입장을 밝힘에 있어서, 언론업무에 대한 최상의 규범으로서 진실성과 독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끊임없는 자기통제 뿐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스트리아신문평의회는 뉴스의 수집 및 전달, 그리고 주장이나 논평의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원칙을 제정한다.

1. 진실 및 진실에 대한 일반공중의 권리에 대한 존중 그리고 설사 일상업무의 처리가 번잡하다고 하여 위 진실의무가 포기되어서는 안 된다.

2. 정확성에 대한 의무. 이 원칙에 따라서 정보의 내용이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동방식은 배제되어야 한다.

3. 인종, 종교, 국가 또는 기타의 동기에 기인한 일체의 차별대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적인 이해관계는 어떠한 방법에 의하든지 직업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4. 언론(대중매체)의 공적인 임무에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내면세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언론이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지 아니하고, 일반대중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언론의 임무에 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사생활에 있어서의 행동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동은 언론(대중매체)의 보도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위 보도를 함으로

인하여 관계없는 제 3 자의 인격권이 함께 침해되는 것은 아닌지의 여부를 항상 검토하여야 한다.

5. 명예훼손을 하지 않을 의무. 정보를 제공하는 직책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은 확실한 증거자료가 제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동료에 대한 비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주장된 비난에 대하여 적절한 증거가 제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증명되지 아니한 또는 증명될 수 없는 비난을 하지 아니할 의무.

7.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조그만 친절의 범위를 넘는 선물을 받지 아니 할 의무. 사교적인 모임이나 여행 등에 대한 초대라도 그것이 직업상의 활동범위를 넘고, 또한 기사의 작성방법이나 경향에 영향을 줄 의도로 행해진 때에는 역시 위 규정에 의하여 이를 거절할 의무가 있다.

8. 직업상의 비밀을 준수할 의무.

9. 기사, 사진 기타의 정보자료를 입수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방법만이 허용된다.

정보의 자유 및 비판과 논평의 권리는 언론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용되어야만 한다.

10. 어떤 기사가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신문(또는 잡지)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원래의 기사에 상응하는 형식으로 그 정정을 보도하여야 한다.

11. 언론 및 TV는 사진보도에 의하여, 그것이 문자에 의한 보도인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 받을 내용으로 될 그러한 사실들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12. 신문(잡지) 내지는 언론인들이 그로부터 돈벌이를 할 목적으로 투기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중대하게 남용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13. 공중을 기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간행매체에 있어서, 편집자의 이익과 상업적인 이익은 이를 엄격히 구별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4. 신문(잡지)사에 보내진 독자의 편지는, 그 발송자가 공표를 명백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를 요약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요약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공표되는 독자 · 시청자의 의견은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5. 보도의 자유는, 설사 외국에 대한 것이라 하여도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인간의 개인적인 생활영역에까지 침투하여 개인적 또는 인간적으로 혈뜯는 상스러운 기사들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6. 독재국가에 관한 사건을 문자 또는 화면기사로서 보도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이러한 국가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자제하여야 한다.

17. 의학적 연구에 대한 보도를 함에 있어서는, 그 문안이나 외관에 의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근거 없는 희망을 가지게 하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지, 초보단계에 지나지 아니한 연구지식이, 거의 최종적인 단계에 있는 것으로 내세워져서는 아니 된다.

18. 규칙적인 정보원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비밀스러운, 공표를 전제로 하지 아니한 사실제공을 비밀로 취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정보제공자가 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분명히 거절한 경우에는 이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 이름을 밝혀서는 아니 된다.

19. 청소년이 형사범죄에 관련되어 있음을 보도하는 경우에는 그 완전한 성명을 밝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